

자격증 등급별 가점(제23조관련)

1.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가.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7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3

나.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	5급	6·7급	8·9급
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콤보장비정비, 기계설계기사,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기사, 교통, 승강기)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유회관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콤보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산업기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산업기사,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산업기사, 영사, 교통, 승강기)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자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시설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통신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2. 유의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9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83조에 따라 채용 할 때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